

#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 징수조례폐지조례(안)심사보고서

1998. 12. 17

시민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8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11월 23일

다. 상정일자 : 제58회 정기회 제10차 위원회 ('98.12.17)
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정해석 환경과장)

### 가. 제안이유

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마포구조례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던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된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하게 된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골자

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함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김건재 전문위원)

- 마포구 조례에 규정된 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(1997.8.22. 법률제5351호) 제100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(1998.4.1. 산업자원부령 제4호) 제26조 별표4에 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##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(안)

의안	
번호	

제출일자 : 1998. 11

제출자 :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

### 1. 폐지이유

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마포구조례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던 에너지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된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하게된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함.

### 3. 폐지근거

에너지이용합리화법 ('97.8.22 법률 제5351호) 제100조

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('98.2.2 대통령령 제15619호) 제42조

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('98.4.1 산업자원부령 제4호) 제26조

### 4. 조례(안) : 별첨

### 5. 예산조치 : 필요없음

첨부 : 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